#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31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김승원·김문수·김현정

김원이 · 안호영 · 권칠승

서영교 · 서미화 · 김남근

전현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 법률 제 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8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205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u>&lt;삭 제&gt;</u>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20577호 채무자 회생 및	법률 제205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0조(과태료) ① ~ ④ (생	제660조(과태료)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를 부과한다.</u>		